

## 「2025년 서울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서울시 소셜벤처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소셜벤처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4. 18.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 서울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 사업기간 : 2025. 4. 18.(금) ~ 2025. 9. 30.(화)**
- 선정규모 : 총 20개 기업**

※ 선정 기업은 기업 진단, 액셀러레이팅, IR 데이, VC 상시 상담 전 과정 필참

### 모집대상

- 투자유치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초기~성장단계 서울 소재 소셜벤처

### 지원자격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없이 자가진단표만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전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협약 전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외

※ 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확인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120개월)이내 기업

-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 신산업분야 : (별첨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지원 제외대상]

채무불이행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li><li>-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li></ul>
미완/허위 정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li><li>-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li></ul>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자작자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li><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캠핑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li></ul>

□ 지원내용

- ※ 기업진단, 액셀러레이팅, 투자유치 연계 지원 외부전문가 연계

○ 기업 진단

-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사업계획서 진단 및 기업의 투자 라운드, 목표 설정 등 수준 진단

○ 액셀러레이팅(IR 역량강화 컨설팅)

- 진단 컨설팅 결과에 따라 Skill-up / Scale-up 2트랙 중 하나로 배정, 기업별 2~3회 IR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 ※ (Skill-up) 투자 준비가 필요한 초기 기업 대상 : IR 기본 컨설팅 및 자료 고도화, 피칭스킬 등 역량 강화 지원
- ※ (Scale-up) 실질적인 투자자 연계가 필요한 기업 : 투자사 매칭 및 1:1 상담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 지원

○ VC 상시 상담 지원

- 투자사(VC) 상시 상담 프로그램 운영(월단위)

- ※ 투자사, 오픈이노베이션 담당기관 1:1 멋업 지원

## ○ IR 데이 개최

- IR 예선심사(피칭 기회 제공), IR 데모데이 개최(총 시장 금액 900만원)

##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 평가	선정발표	기업진단	IR 역량 강화 컨설팅	VC 상시 상담 지원	IR 데이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4.18.~ 5.9.	서류평가 (1차) 1.5배 선발, 발표평가 (2차) 진행  5.12.~ 5.22.	선정기업 발표 (20개)  5.23.	선정기업 대상 기업 진단 및 지원 트랙 배정  5.29.~ 6.13.	투자유치 및 IR 컨설팅 (20개)  6~8월 (약 3개월)	투자사(VC) 상시 상담 프로그램 운영  6~8월 (약 3개월)	IR 예선 통한 피칭 기업 선발 (10개), 우수기업 선정(3개)  (예선) 9.3.~9.4. (본선) 9.24.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 접수 및 선정방법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4. 18.(금) ~ 2025. 5. 9.(금) 18:00
- 공고장소 : 서울소셜벤처허브 및 사회적경제·창업 관련 기관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첨부 양식 작성 하여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이메일 : im@svhc.or.kr
  - 접수 마감일 : 5월 9일(금) 18:00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해서 접수

○ 제출서류

구분	기업 제출 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서식	필수 제출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국/영문 IR Deck 자료 (투자실적 및 투자유치계획 내용 포함)	자유양식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3개년 재무제표 및 추정 재무제표	증빙 포함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사본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와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8	투자유치 실적 증빙 (투자 확인서, 투자 계약서, 주주명부 등)		

※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가 아닌 자가진단표 제출기업은 해당 사안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7번)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미비서류 등 적격 여부 확인
- 발표평가 : (온라인) 아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외부 전문가 심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솔루션 타당성	30
사업수행 역량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열정, 발전 가능성 - 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20
시장성	- 목표시장 전망 및 매력도, 시장 확보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성	20
성장가능성	- 사업 성장 및 매출 실현 가능성 - 투자유치 실적 및 가능성	30
합계		100

- 결과 발표 : 서류 심사 결과 5월 14일(수), 최종 선발 결과 5월 23일(금)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및 별도 공지

※ 심사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서울소셜벤처허브 담당자

- 이메일 : im@svhc.or.kr, 전화 : 02-6230-0305

불 임 1 | 참가신청서 (필수)

## 2025년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참가 신청서

사업 설명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 간결하게 작성)  
예: 장애인 맞춤 재활운동 콘텐츠 제공 온 오프라인 플랫폼

### 1. 참여기업 기본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설립일자 (업력)	(0년 0개월)	직원 수	(고용보험 기준 작성) 명
업종	(사업자등록증 표기 업종)	홈페이지	
제품·서비스	예: 운동 콘텐츠 앱000, 비대면 코칭 프로그램, 헬스케어 커뮤니티000		

### 2. 담당자 정보

성 명		직 위	
이 메 일		연 락 처	

### 3. IR 준비도 (있는 것에 체크)

- IR 발표자료       IR 컨설팅/교육 경험       투자자 대상 피칭 경험  
 투자자 미팅 경험       투자전략/유치계획(목표 단계/금액, 활용 계획, 타깃 투자자 등)

### 4. 참여기업 주요 현황

자 본 금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매 출 액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고용현황	2022년	명	2023년	명	2024년	명
투자실적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예정금액	백만원

상기 본인은 「2025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 귀하

## 불 임 2 사업계획서 (필수)

# 2025년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본 유의사항은 작성 편의를 위한 안내이며, 제출 시 삭제 가능)

- 사업계획서 항목은 확장 및 추가 가능, 5페이지 이내로 작성(분량 준수)
- 사업 내용의 보충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 가능
- 제출된 참여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됨
- PDF로 파일 변환 시 한 면에 두 페이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A4 출력 시의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알아보기 어려운 글자크기 및 이미지 지양)

### 사업 설명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 간결하게 작성)

예: 장애인 맞춤 재활운동 콘텐츠 제공 온 오프라인 플랫폼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1. 기업 및 구성원 소개

- 기업 소개(창업 배경, 목표, 비전 등)
- 대표자 및 주요인력 현황(창업 경험, 사업추진 역량, 전문성 등), 조직도 등
- 경영철학 및 경영의지 등

번호	성명	담당직무	주요 경력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작성</li><li>•</li></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ul>	

#### 2. 주요연혁

세부 사업계획 (제출 시 파란 글씨 안내 내용 삭제 가능)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및 소셜 미션 (사업 추진 배경)

- 해당 사회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및 사업 필요성
- 문제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기업의 미션 및 사업 목표

2. 주요내용 (차별성 및 핵심 경쟁력)

- 사업아이템 내용 및 특징, 유사콘텐츠 대비 차별성 및 경쟁력 등 작성
- 사업아이템 이미지


3. 사업 추진 방안

- 사업 추진 목표 및 계획, 투자유치 계획 등 작성

4. 국내외 목표시장

- 목표 타깃 및 국내외 시장 경쟁자 분석, 진출 전략 등을 작성

5. 수익모델 및 향후 기대효과

- 사업화 전략(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방법, 기대효과(예상매출액 필수) 등 작성

주요 투자상황 및 투자유치 계획

1. 이전 투자유치 실적			
번호	계약일자	투자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백만원)
1	0000.00.00	*셀 추가하여 기입가능	
2			
3			
합계			
2. 향후 투자유치 계획			
희망금액	000 백만원		
희망 투자자	벤처캐피탈, 마이크로VC, 신보/기보/중진공, 액셀러레이터 등		
활용계획	(예)운영비 1억원, 마케팅 2억원, 생산설비 10억원		
필요시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1년 이후

※ 이전 투자유치 실적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불 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지원하는 본 사업 신청과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지원하는 본 사업의 집행 및 결과 증빙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 제출하는 서류 상에 기재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 기간까지(5년)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사업 신청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지원하는 본 사업 신청과 선정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지원하는 본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기업정보의 항목

- 제출서류에 기재하는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지원신청내용 등
- 협약체결 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의 법인등록번호 등의 관련 정보

#### 다. 기업/기관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 기간까지(5년)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당사는 기업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사업 신청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울소셜벤처허브 「2025년 서울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신청, 사업 수행, 집행 요청,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성명:

(인)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 귀하

## 불 임 4 투자유치 실적 증빙 (해당시)

### 제출내용

※ 삭제 후 제출

#### ※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실적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등록된 자(기업)에 한함
-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 선정(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제출서류 (투자유치실적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1개 제출)

- \* 제출서류에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린 후 제출 가능  
단, 투자당사자 정보(직인 날인 포함), 투자금액, 투자일자 등 핵심 정보는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 ① 투자 확인서(직인 날인 포함)
- ② 투자 계약서
- ③ 주주명부(투자자 등재사항 확인용)
- ④ 언론보도, 투자의향서 등

### 투자유치 실적 증빙

증빙 종류	<input type="checkbox"/> 투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투자 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주주 명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양식] 투자확인서 (투자자용)

「2025년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투자 확인서 (투자자용)

투자자	기업명 (대표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해당 여부 체크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 기업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설립일		자본금(원)			
	총 발행 주식수		액면가		업종	
소재지(주소)						

투자명세표

① 보유기간		② 주식수	③ 투자금액(원)	④ 지분율	⑤ 비고
투자일자~회수일자	기간(개월수)				
계					

- \* 본 확인서는 '25년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요건검토 등을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것이며, 투자자의 양식에 따라 본 양식을 수정 편집 가능
- \*\* 본 확인서의 작성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등록된 투자자(기업)에 한함

위와 같이 투자사실 및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투자기관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직인 날인이  
불가한 경우,  
투자기관 공문으로  
대체 가능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 귀하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판별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한 건은 불인정)

### ① 사회성 진단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자가 진단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sup>1)</sup> 되어 있고, 추진 <sup>2)</sup>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 <sup>3)</sup> 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수 합계				점	

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2)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② 혁신성장성 진단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자가 진단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sup>4)</sup> 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sup>5)</sup>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sup>6)</sup>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up>7)</sup>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 <sup>8)</sup> 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 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점	

4)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5) “혁신성장공동기준” 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6)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2호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 제1항 관련)

- ① 인공지능
- ② 빅데이터
- ③ 5G+
- ④ 블록체인
- ⑤ 서비스플랫폼
- ⑥ 실감형콘텐츠
- ⑦ 지능형 로봇
- ⑧ 스마트제조
- ⑨ 시스템반도체
- ⑩ 자율주행차
- ⑪ 전기수소차
- ⑫ 바이오
- ⑬ 의료기기
- ⑭ 기능성 식품
-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 ⑯ 미래형 선박
- ⑰ 재난/안전
- ⑱ 스마트시티
- ⑲ 스마트홈
- ⑳ 신재생에너지
- ㉑ 이차전지
-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㉔ 우주
- ㉕ 차세대 원전
- ㉖ 양자
- ㉗ 사이버보안